

- 2022년도 제2회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2회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2월 3일

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개요

※ 근무기간은 최초 1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 (총 4년 연장 가능)

※ 주 35시간 근무

임용직급	임용분야	임용인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무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근무)	건축안전	1명	건축과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내화구조, 방화구획, 마감재료, 피난규정 등에 대한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건축공사 감리 관리·감독 수행피난, 내화, 소방에 대한 노후 건축물 점검 등건축구조 분야 업무 지원
	건축구조	1명	건축과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조설계, 내진설계, 구조부재 설계에 대한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공사장 안전 관리·감독 수행구조안전에 대한 노후 건축물 점검 등구조안전 분야 업무 지원

임용직급	임용분야	임용인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무내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근무)	코로나19 방역인력	4명	보건소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학조사, 재택치료, 자가격리, 상황관리, 선별진료소 기타 방역 업무 - 필수 자격(면허)증 관련 보건소 업무(방역대책추진단 투입인력의 대체인력으로 업무 수행) ◦ 코로나19 상황 조기 종료 시 필요에 따라 결원부서 행정 업무
	결핵 사례관리 (간호사)	1명	보건소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업무 (사례 발굴 및 상담, 계획수립, 자원연계, 점검 등) ◦ 국가결핵관리사업 운영지원 업무 (환자 관리, 잠복결핵 업무 등) ◦ 임상병리실(채혈 등) 업무 지원 ◦ 기타 보건소 공통업무 지원
	건강생활 (건강운동 관리사)	1명	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실 운영 (기초체력 측정 및 상담, 운동처방·지도)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예방 운동 교육 및 홍보 ◦ 기타 보건소 공통업무 지원

2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바. 원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요건

가. 일반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정지 또는 제한이 되지 아니한 사람
- 국 적: 대한민국
- 응시연령:

임용직급	응시연령	비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만20세 이상	2002. 12. 31.이전 출생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만18세 이상	2004. 12. 31.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 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일: 공고일 현재)

임용분야	자격·경력 요건
건축안전	<p>【필수사항】 건축사법에 따른 <u>건축사 자격증</u>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실무경력】 건축물 설계 분야 및 공사감리 분야의 실무경력</p>
건축구조	<p>【필수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u>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u>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특급 기술인 우대)</u>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실무경력】 건축구조 분야의 실무경력</p>
코로나19 방역인력	<p>【필수사항】 아래 자격(면허)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로, 자격(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아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면허)증: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p>【관련분야 실무경력】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일반행정 업무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p>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 또는 보건행정 업무 경력자 우대 - 주말 및 야간 근무가 가능한 자 - 코로나 확산으로 초과근무 가능한 자
결핵 사례관리 (간호사)	<p>【필수】 「의료법」에 따른 <u>간호사 면허</u>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 <u>1년 이상 결핵 관련 분야</u>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 간호업무가 아닌 결핵 관련 업무여야함.(EX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간호 등)</p> <p>【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자차 운전이 가능한 자 - 국가결핵관리사업 관련 경력자
건강생활 (건강운동관리사)	<p>【필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u>건강운동관리사 자격</u> 취득 후 학교,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u>1년 이상 운동사업 관련 실무경력</u>이 있는 사람</p> <p>【우대사항】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자격증 소지자)</p>

***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면허증 제출**

※ **경력요건 증빙자료 관련 참조사항**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시,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
 -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기재
 -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며, 발급기관 관인 날인

*근무기간

- 상근(주40시간 이상) : 경력 전부 인정
- 비상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
ex) 2년간 주20시간 경력 → 1년으로 인정
-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

-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인정 기한: 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보 수 수 준

임용직급	임용분야	연봉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건축안전	51,922,970원
	건축구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코로나19 방역인력	35,341,440원
	결핵사례관리 (간호사)	
	건강생활 (운동관리사)	

-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가지급
- ※ 상기 연봉액은 기본연봉·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특수직무수당 합산액이며 상기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 ※ 기본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마급의 경우 9급 상한액의 71%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대직불가 직무 등 업무 특성 상 장기 휴가 및 휴직 등은 불가

5

시 험 방 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등 응시요건 적합여부 심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경력, 자격증 등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면접평정 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

※ 면접평정 요소

- | | |
|--------------------|-----------------|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6

시 험 일 정

가.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공고: 2022. 2. 3.(목)~2. 14.(월)
- 원서접수: 2022. 2. 10.(목)~2. 14.(월) 18:00까지
(공휴일 제외, 마감 후 추가·수정접수 불가)
- 접수방법: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

- 접수처: 원주시청 7층 총무과 인사팀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11:30~13:00 제외)
- 접수 전 시청 1층 민원과(6번창구)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후 접수

※ 응시수수료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7,000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5,000원

※ 수입증지 납부 전 응시자 본인이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수

【등기우편 접수】

- 주소지: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총무과 인사팀 (무실동, 원주시청) (우 26384) 채용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빠른 등기 소인분에 한함(택배·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다음 날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응시번호 확인 필수
(임기제 채용담당자 : ☎ 033-737-2224)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으로 교환하여 동봉
 - ※ 통상환증서 받을 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기재하여 교환
 -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예정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2. 16.[수] 예정

다. 면접시험 ※ 변동 가능

임용분야	일 정
건축안전	2022. 2. 21.(월)
건축구조	2022. 2. 21.(월)
코로나19 방역인력	2022. 2. 21.(월)
결핵사례관리(간호사)	2022. 2. 21.(월)
건강생활(운동관리사)	2022. 2. 17.(목)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2. 2. 23.[수] 예정

마. 최종임용: 2022. 3월 초

- ※ 시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합격자 발표 공고문은 원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장소 · 일정 등 공고하며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

7

제 출 서 류

【하단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등 사용 없이 순서대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 수수료: 임기제 나급 7,000원(건축안전, 건축구조)
임기제 마급 5,000원(코로나19방역인력, 결핵사례관리, 건강생활)
※원주시수입증지형태로 납부해야함,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수 입 증 지: 원주시청 1층 민원과(6번 창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 (이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 증빙자료 없을 시, 기재금지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미 제출시, 기재금지
-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필수 기재사항 ※필수사항 미기재 시,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
 -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기재
 - 증명서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며, 발급기관 관인 날인

*근무기간

- 상근(주40시간 이상) : 경력 전부 인정
- 비상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
ex) 2년간 주20시간 경력 → 1년으로 인정
-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

-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인정 기한: 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 확인용으로 근무기관과 이력이 동일해야 함.
-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요구 가능함.

사. 자격증 사본(자격기준이 되는 자격증은 필수제출, 그 외 선택사항) 1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취득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1년 이내 발급본에 한함)

자.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차. 주민등록초본 각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파.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선택사항]

- 각종 증명서 등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8

유의사항

-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연금법»,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 나. 원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공고를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다.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원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요구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재공고인 경우 응시자 발생 시 추가 재공고 없이 다음 시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바. 면접시험 불합격 등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인원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 추후 안내하는 면접등록시간까지 면접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기간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 담당부서에 경직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카.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하며,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타.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 담당자(☎033-737-222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